



가설기자재 성능 검정 합격품 표시인 “안”마크가 절단된 단관 비계용 강관의 사용 가능 여부



단관 비계용 강관을 절단하여 사용 할 경우 형태가 변경되어 (예 : 6M → 4, 3, 2M) 양쪽에 각인된 “안”자 마크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안”자 마크가 절단된 단관 비계용 강관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 및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 검정 절차에 관한 규정(제98-65호) 제10조에 단관 비계용 강관은 성능검정을 받고 합격하였을 경우 “안”자 마크를 각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성능검정에 합격한 단관 비계용 강관을 비계용 외의 필요한 장소에 사용하기 위해 절단하는 과정에서 각인된 “안”자 마크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검정 당시와 강도 등 구조적인 성능에 변함이 없다면 사용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의4에 의한 안전관리 사용기준이 배치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비와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는 근본적으로 그 목적과 계상 방법 및 사용기준을 달리하고 있음.

- 따라서 각 법상의 취지에 맞게 안전관리비의 계상을 달리하고 그 사용기준을 따라 사용·정산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행정적으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잘못 기재한 사항도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업체의 행정적으로 안전관리비가 아닌 항목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의 확인 결과 밝혀져 수정을 통해 비 항목 부분제외 또는 항목조정을 실시한 후에도 항목 별 적정사용 금액기준에 맞고, 총 법정 안전관리비 이상 사용하였다면 적정 사용으로 보는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도급인이 사업주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향후 정산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

